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구단5619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10. 26.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1. ○○ ○○구 B 대 1,486.7㎡(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C 대 7,968.5㎡(이하 'C 토지'라 하고, B 토지와 C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에서 보는 C~E 구역(면적 합계 619.3㎡)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인근에 보행자도로로서 공도가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私道)임을 인정하여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C 토지 중 A구역(감정서 도면 표시 10, 11, 19, 12, 17, 18,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및 'ㅁ' 부분 총 면적: 327.5㎡) 및 B 토지 중 B구역(감정서 도면 표시 1, 2, 14, 15, 17, 12,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및 'ㄴ' 부분 총 면적: 150㎡, 이하 위 A구역과 B구역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는 인근에 공도인 보행자도로가 연접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아,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총 9,455.2㎡) 중 위 C~E구역 면적 619.3㎡를 제외한 나머지 8,835.9㎡(이 면적 안에 이 사건 쟁점토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음)를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298,741,779,000원)으로 하여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193,767,110원, 도시지역분

---

1) 이 사건 소장에는 청구취지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193,767,11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418,238,490원, 지방교육세 238,753,4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64,577,1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22,601,990원, 지방교육세 12,915,420원 합계 100,094,510원을 취소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재산세 64,577,1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22,601,990원, 지방교육세 12,915,420원 합계 100,094,510원은 별지1. 표의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며, 이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동일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재산세 418,238,490원, 지방교육세 238,753,4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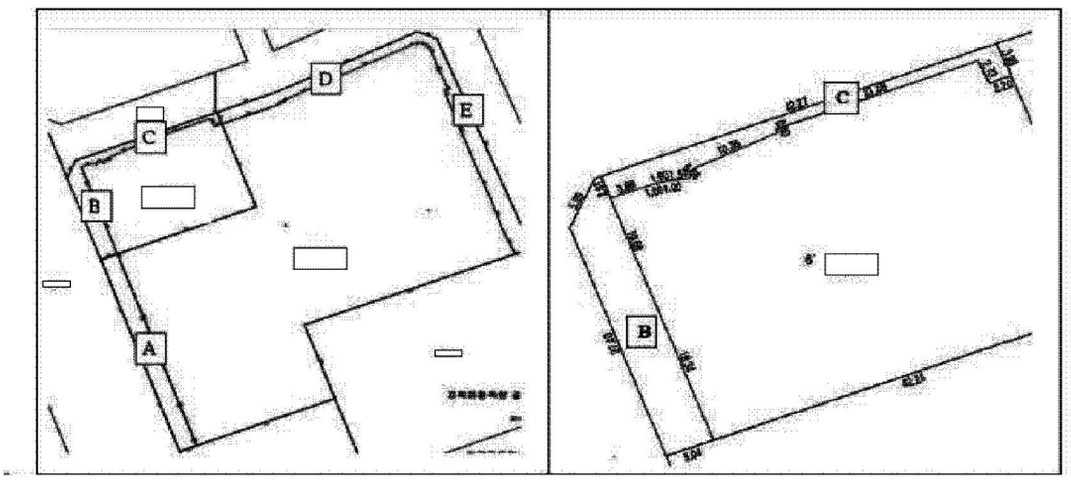

구역	위치	면적(㎡)
A	C 토지	327.5
B	B 토지	150.0
C	B 토지	79.3
D	C 토지	540.0
E	C 토지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심 2019지38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이 사건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아무런 제한 없는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 소유 건물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독점적·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토지분 재산세 64,577,100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22,601,990원, 지방교육세 12,915,420원, 합계 100,094,510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일부 사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공도를 통해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역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19년을 기준으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이상 현재도 마찬가지임).

1)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인 지하 6층, 지상 38층 구조의 D 건물(1999년경 신축,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고, 원고의 본점은 이 사건 건물에 소재해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 1층 등에는 카페, 식당 등 수개의 영업점이 입점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쪽으로는 E, 북쪽으로는 F, 동쪽으로는 G과 각각 접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E를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남쪽에는 지하철 2호선 H역 7번 출입구와 H역 교차로, 서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북쪽에는 지하철 9호선 I역 6번 출구가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북쪽과 남쪽 양 끝 주변에는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쪽 부분의 E(왕복 6차선)와 인접한 토지의 일부이다. 이 사건 쟁점토지와 E(차도) 사이에는 폭 1m 내외의 보행자도로(공도, 이하 '이 사건 공도'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도와 E(차도) 사이에는 버스정류장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철제 가드 파이프(대략 높이가 1m 이하로 보임)가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공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로 되어 있고, 다만 이 사건 공도의 포장재료와 유사한 색상의 경계석(사진1의 '○'표시)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와 이 사건 공도는 단차가 없으며(경계석도 마찬가지), 공도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사진1	사진2
	

5) 한편 이 사건 공도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가로수 화단, 가판대(컨테이너), 버스 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거나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도가 아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H역 방면(남쪽) 또는 I역 방면(북쪽)으로 통행하고 있다.

사진3	사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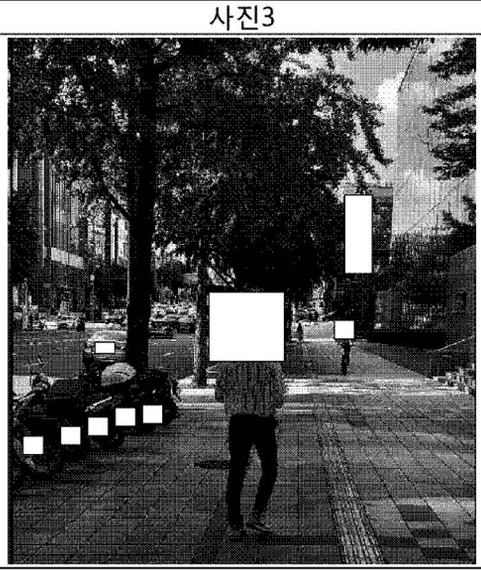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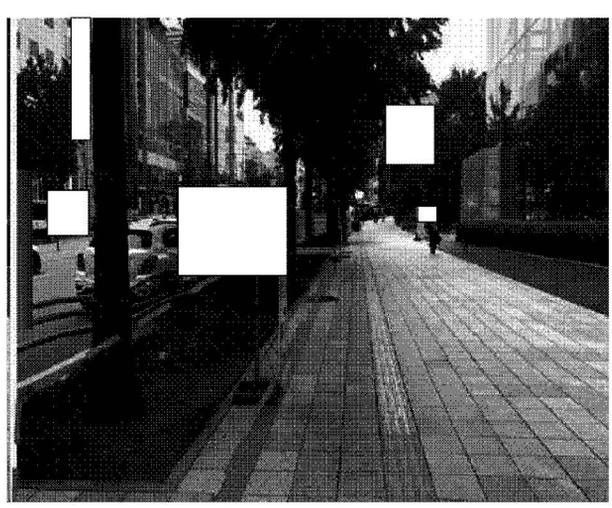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사진5	사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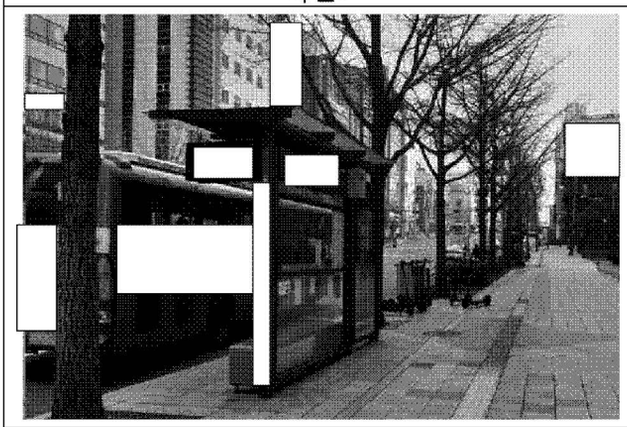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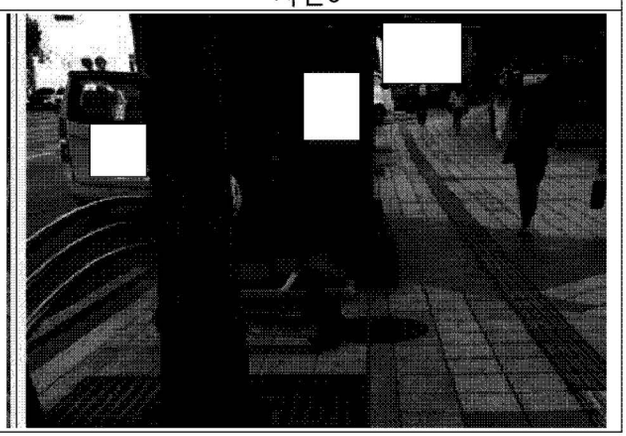

6)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원고 소유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속 공개공지는 다른 포장재료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토지와는 단차가 있으며, 원고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화단과 벤치와 같은 휴게시설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사진7).

7) 이 사건 쟁점토지의 북쪽과 남쪽 끝에는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사진8, 다만 2020. 4.[2] 이후 어느 시점에 북쪽 끝에 설치되었던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은 철거된 것으로 보임).

사진7	사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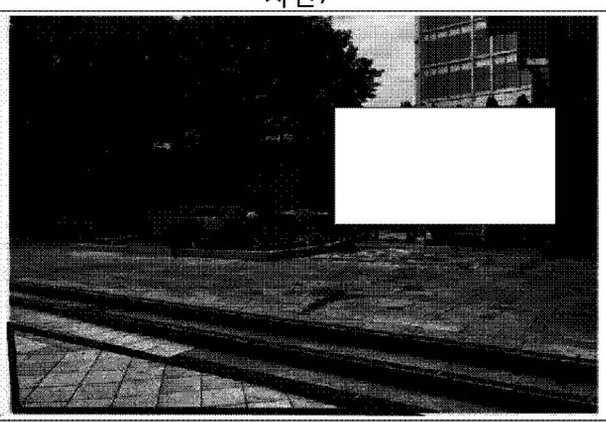	

2) 인터넷 J 서비스에서 과거 '거리뷰' 사진을 검색해 본 결과 2020. 4.까지는 이 사건 쟁점토지 북쪽 끝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확인되는 반면, 2021. 7. 사진에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라. 판단

1) 관련 법령과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위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9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 호 규정이 주로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란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대법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및 이 사건 쟁점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공도 등 주위 대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무렵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전체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고, 같은 호 단서가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려는 고객들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9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쟁점 1, 2토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행로로 제공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화단이나 그 밖에 원고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대해 제약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공도(보도)와 연접해 있는데, 2019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도에는 중간 중간 가로수 화단, 가판대, 버스정류장, 자전거 거치대, 쓰레기통과 같은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공도에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오토바이를 세워둔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설치된 구간은 이 사건 공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공도 전체가 잠식된 곳(앞서 본 사진 6 참조)도 있어, 사실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는 보행자가 오직 이 사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공도가 아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H역 방면(남쪽) 또는 I역 방면(북쪽)으로 통행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쟁점토지는 여러 시설물 등으로 인해 사실상 통행이 어렵거나 또는 통행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이 사건 공도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남쪽과 북쪽 사이를 이동하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원고 소유라거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 사건 공도와 동일한 포장재료로 되어 있고 단차가 없으며 공도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양자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한 공개공지를 이 사건 공도 및 이 사건 쟁점토지와 다른 포장재료로 포장하거나 단차를 두고 화단이나 벤치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을 설치함으로써 외관상으로도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부분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라) 2019년 및 그 전·후로 원고가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을 막고 이 사건 쟁점토지에서 원고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소한 2019년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의 남쪽과 북쪽 끝에는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는바(다만 2020. 4. 이후 어느 시점에 북쪽 끝에 설치되었던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은 철거되었음), 그와 같이 기둥이 설치되어 있던 기간에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였다.

마)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수년간(최소한 2019년 이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토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 위 가) 내지 마)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공도를 통한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은 이 사건 공도의 전 구간에 걸쳐 단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일체로서 남쪽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H역 7번 출입구 인근 보도에서부터 E를 따라 북쪽으로 연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되는 하나의 통행로를 이루고 있으며, 위 시설물들이 설치된 구간과 설치되지 않은 구간 또는 인접한 공도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 구간과 불가능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이를 별개의 통행로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위 시설물들로 인해 사실상 오직 이 사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이 사건 공도 전체가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인접한 공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이 없어 그 공도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해당 부분은 '사도'가 아니라거나 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정당세액의 계산

이 사건 쟁점토지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정당한 세액은 별지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1,129,190,01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395,636,500원, 지방교육세 225,838,000원이 된다.

바.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별지1. 표의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취소세액
과세면적	8,835.9	8,358.4	477.5
개별공시지가	48,300,000	48,300,000	
과세표준	298,741,779,000	282,597,504,000	16,144,275,000
재산세	1,193,767,110	1,129,190,010	64,577,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418,238,490	395,636,500	22,601,990
지방교육세	238,753,420	225,838,000	12,915,420
세액 합계	1,850,759,020	1,750,664,510	100,094,51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끝.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생략)

끝.